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법 학 과

이 상 헌

법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일수별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선 복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법 학 과

이 상 헌

이상헌의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위 원 장 법학박사 박 종 원 (인)

위 원 법학박사 지 규 철 (인)

위 원 법학박사 김 선 복 (인)

## [목 차]

Abstract .....	V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b>제2장 벌금형제도의 일반적 고찰</b> .....	6
제1절 벌금형의 의의와 연혁 .....	6
I. 의의 .....	6
II. 벌금형의 연혁과 현대적 의의 .....	8
1. 벌금형의 연혁 .....	8
2. 현대적 의의 .....	9
제2절 벌금형의 장단점 .....	10
I. 벌금형의 장점 .....	10
1.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대체수단 .....	10
2. 법인범죄의 처벌에 유효 .....	11
3. 과실범과 이욕범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	11
4. 오판 시 원상회복 가능 .....	12
5. 형벌효과의 참신성 .....	13
6. 집행의 경제성과 절차의 간편성 .....	13
II. 벌금형의 단점 .....	15
1.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 .....	15

2. 범죄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악영향 .....	16
3. 제3자의 대납 가능성 .....	16
4. 사회보호 및 일반예방효과 미흡 .....	17
<b>제3장 현행 벌금형제도와 문제점 .....</b>	<b>18</b>
제1절 벌금형 관련 규정과 선고 현황 .....	18
I. 벌금형 관련 규정 .....	18
1. 형법 규정 .....	18
2. 형사소송법 규정 .....	19
3.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규정 .....	20
II. 벌금형 선고 현황 .....	21
1. 1심 형사공판 벌금형 선고 현황 .....	21
2. 약식절차 벌금형 선고 현황 .....	22
3. 즉결심판 벌금형 선고 현황 .....	23
제2절 벌금형의 개선을 위한 신설 규정과 한계 .....	24
I.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신설 .....	24
1. 의 의 .....	24
2. 비판적 검토 .....	25
II. 벌금형의 분납·연납 및 신용카드의 납부 .....	29
1. 의 의 .....	29
2. 비판적 검토 .....	30
제3절 노역장 유치처분의 문제점 .....	32
I. 의의 .....	32
II. 노역장유치의 문제점 .....	33
1.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 .....	33

2. 노역장 유치의 증가와 수용시설의 과밀화 .....	34
3.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기준의 부재 .....	36
제4절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 .....	38
I. 현행 벌금형제도의 의의 .....	38
II. 총액벌금제도의 문제점 .....	39
1. 형벌효과의 불평등 .....	39
2. 단기자유형화 .....	40
3. 경제사정 변화의 미반영 .....	40
III. 소 결 .....	41
<b>제4장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검토</b> .....	43
제1절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	43
I. 일수벌금제도의 의의 .....	43
II. 일수벌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	44
III. 형법개정안과 학계의 논의 .....	46
1. 형법개정안 .....	46
2. 학계의 논의 .....	49
IV. 소 결 .....	51
제2절 외국의 일수벌금제도의 도입과 시행 .....	53
I. 외국의 입법례 .....	53
1. 독일 .....	53
2. 핀란드 .....	56
3. 스위스 .....	57
4. 스웨덴 .....	59
5. 오스트리아 .....	60

6. 프랑스 .....	62
Ⅱ. 입법례의 시사점 .....	64
1. 벌금일수 .....	64
2. 1일 벌금액 .....	65
제3절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67
Ⅰ. 판결 전 조사 제도의 확대 .....	68
Ⅱ. 피고인의 재산상황 조사 범위 확대 .....	69
Ⅲ. ‘벌금일수’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71
Ⅳ. 소 결 .....	72
제5장 결 론 .....	73
참고문헌 .....	77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ay - Fines

Sang Heon Lee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fine is nowadays an important punishment that accounts for most of the sentence in handling criminal cases, including summary orders. However, in Korea, the existing fine system is based on total amount fine system that presents the same amount of fine according to the nature of crime, regardless of the economic situations of offenders. In addition, if they can not pay their fines, they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labor house, resulting in short term imprisonment. This means that even if the same amount of money is imposed for the same act, the practical effect on punishment can vary depending on economic abilities. That is, the current total amount fine system has a problem in that imposing unequal punishment on them due to economic abilities. It is an unreasonable phenomenon that economic inequality leads to punishment inequality. Thus, as the current total amount fine system does not reflect offenders' economic abiliti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can not be achieved. The poor are forced to short term imprisonment by the imprisonment in labor house but the rich aren't.

A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ever growing by changes in

society, the value of money is no longer equal to anyone. However, the current fine system does not reflect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o it is not keeping pace with changes in our society. The effect of punishment that must be enforced fairly is unjust according to economic abilities, and it is becoming more severe punishment for the poor. It says that the current fine system has a serious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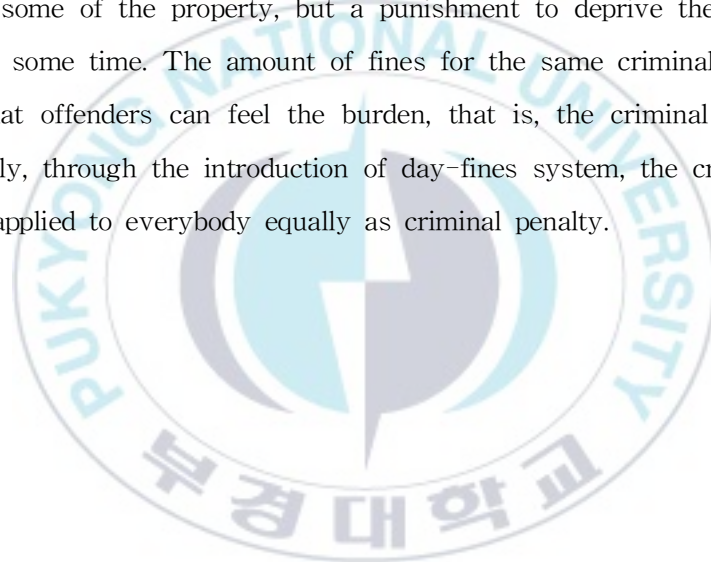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day-fines system as an alternative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total amount fine system. The day-fines system is a system to calculate 'the number of days of a fine' according to illegal act and liability of actor and 'the amount of a fine a day' considering actor's economic ability. That is, the fine is imposed to be differential rate depending on economic ability.

Of course, the day-fines system is not the only alternative to solve all the problem of total amount fine system.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day-fines system as an alternative can change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urrent fine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Despite of many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ke various efforts to introduce the day-fines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imbalanced effect of punishment', which is a fundamental problem of the current fine system.

It must be prepare thoroughly in advance to be successful for the introduction of day-fines system. More importantly, it is the core of day-fines system to accurately assess offender's economic ability and to calculate 'the amount of a fine a day'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economic ability. Therefore,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used for setting conditions to investigate offender's economic ability. It is needed to consider a measure to grant the court the authority in order to make estimates on the basis of the related materials in case the precise investigation is inevitabl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legal basis to allow the court to request the related materials to the bank or the company that offender engages i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perty inquiry syste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Further,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sentencing guideline as to 'the number of days of a fine', there is need for the substantive enactment for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number of days of a fine' and 'the amount of a fine a day' in consideration of legal security and predictability.

As the value of money changes, the fine should no longer be a punishment to deprive some of the property, but a punishment to deprive the property of earning for some time. The amount of fines for the same criminal acts should be such that offenders can feel the burden, that is, the criminal punishment. Consequentl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ay-fines system, the criminal effect should be applied to everybody equally as criminal penalty.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등하다’ 사전적 의미로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즉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인 형벌권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형벌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의 사회적 제재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자유형은 신체의 구속을 전제로 하므로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의 형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재산을 전제로 그것을 박탈하는 벌금형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로 적용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누구에게나 ‘돈의 가치는 같은가’하는 의문을 전제로 현행 벌금형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벌금형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단기자유형이나 다름없는 노역장 환형 유치 규정 또한 두고 있다. 이는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실질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표면적으로 같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부유한 자는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가난한 자는 납입하기 힘든 금액이 되어 노역장으로 유치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즉 현행 총액벌금제도는 개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누구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되고, 누구에게는 가벼운 형벌이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논란이 된 기업총수의 이른바 갑질 폭행사건<sup>1)</sup>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감안한 고작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로서 위하 효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sup>2)</sup> 왜냐하면 수십억이 넘는 재산가들에게 몇 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사소한 것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 ‘돈만 내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자는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노역장에 환형처분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에도 몇 백만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노역장으로 유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단체가 ‘장발장 은행’<sup>4)</sup>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의 손자인 현대BNG 정일선 사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골프 바지에 허리띠를 매에 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허리띠를 찾지 못하자 화장품 가방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일선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3년 동안 교체한 운전기사가 무려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4명씩 운전기사를 교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벌의 갑질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2017. 2. 1일자, 미디어 오늘 기사, “운전기사 폭행 갑질한 재벌에 내려진 죄는 벌금 300만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58>
- 2) 반면 일수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2000년 노키아 기업의 안시 반요키 부사장이 시속 25Km를 과속한 혐의로 인해 일수벌금 116,000유로, 즉 환화로 약 1억 4000만원의 금액을 납부하였다.
- 3) 2017. 7. 20일자. 이데일리 기사, “[문재인정부 5년]수백만원 벌금못내 감옥행 5년새 20% ↑...’장발장은행’ 지원한다.”<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
- 4) 장발장은행은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2015년 2월 25일 운영되었다. 설립이유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가난이 곧 교도소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고쳐보고자, 소득불평등이 곧 형벌불평등인 사회를 넘어서보고자 ‘무담보’ ‘무이자’ 인간신용은행을 시민들이 나서서 설립키로 한 것”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심사 우선 대상”이라고 한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6개월 거치 1년간 균등 상환이다; 장발장은행 홈페이지([www.jeanvaljeanbank.com](http://www.jeanvaljeanbank.com))참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현행 총액벌금제도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평한 벌금형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과거 벌금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벌금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총액벌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일수벌금제도는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즉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총액벌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당한 벌금형을 선고하여 ‘희생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수벌금제도는 개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벌금형이 부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등한 형벌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대체자유형의 집행가능성을 감소시켜 단기자유형의 폐해로부터 벌금미납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는 벌금형이 너무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국가형벌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워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현행 총액벌금제도의 내재적 한계내지 결함인 ‘형벌의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일한 정도의 불법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동일한 가치 또는 효과를 가져야 형벌의 공평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의 액수도 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질 때 그 공평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돈의 가치가 변하듯이 벌금형도 이제 더 이상 얼마만큼의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 아니라 얼마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 되어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벌금형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다각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총액벌금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행 벌금형제도에 대한 분석 및 일수벌금제도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내의 관련 문헌을 비롯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문헌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자료와 언론 기사를 활용하고, 벌금형의 선고현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범죄백서」 「검찰연감」의 공식 통계자료를 참고하기로 한다.

일수벌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의되었던 ‘개정법률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법무부가 발행한 각 나라의 형법전을 주로 참고하기로 한다.

이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벌금형의 일반적 고찰로 의의, 연혁,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벌금형의 관련규정과 선고현황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현행 벌금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형벌 불평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역장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인 총액벌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일수벌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먼저 일수벌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과거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로서 ‘개정법률안’과 학계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를 검토하고, 일수벌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총액벌금제도의 대체수단으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장 벌금형제도의 일반적 고찰

### 제1절 벌금형의 의의와 연혁

#### I. 의의

우리나라의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41조). 형벌은 박탈되는 법익에 따라서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벌금·과료·몰수)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벌금형은 신체를 일정장소에 구금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납입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경제적 부자유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5)</sup> 즉 벌금형은 일정금액을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하여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과 금전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형벌효과를 달성하는 제재이다.<sup>6)</sup>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시설 내의 구금이 없으므로 사회적 제재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sup>7)</sup> 자유형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화·개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면, 벌금형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만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응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8)</sup>

5) 조규범,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정책보고서 제3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3면;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03면.

6) 이상한, “양형기준과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한양법학 제25권 제2집(통권 제47집), 한양법학회, 2014, 280면.

7) 김태우, “법정형 체계의 입법론적 검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48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3면.

8) 김선복,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비교형사법학회, 2004, 148면.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형법 제45조)되어 있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된 과료(형법 제47조)와 구별된다. 벌금형은 일정한 금액의 납입의무만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몰수(형법 제48조)와 같이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sup>9)</sup>

또한 형법상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자유형에 대해 선택형<sup>10)</sup> 또는 병과형<sup>11)</sup>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가형으로 규정된 몰수와 구별된다. 벌금형은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일신전속(一身專屬)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고, 개별책임원칙이 적용되어 공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각각의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up>12)</sup>

벌금형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기초할 때 원칙적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78조). 같은 맥락에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이 벌금형에 대한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79조).<sup>13)</sup>

9) 서주연·최영신,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3면; 정영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2011, 528면.

10)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제219조(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9조(절도) 등이 있다.

11) 벌금형이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는 형법 제114조 제3항(범죄단체의 조직), 제204조·제209조·제220조·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37조·제282조·제345조·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38조 3항(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363조 2항(상습범) 등이 있다. 반면 벌금형만이 단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는 제163조(변사자검시행해), 제170조(실화), 제181조(과실일수), 제246조 1항(도박), 제248조 제3항(복표의 발매 등) 등이 있다.

12) 김선복, 「형법총론」, 세종출판사, 2015, 477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3면; 정성근·정준섭, 「형법강의 총론」, 박영사, 2016, 415면.

## II. 벌금형의 연혁과 현대적 의의

### 1. 벌금형의 연혁

벌금형은 원래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 내지 속죄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4)</sup> 우리나라의 경우 속죄금의 성격으로 벌금형의 원형을 먼저 고조선의 8조법에서 찾을 수 있다. 8조법 제3조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속죄금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여와 고구려의 경우 배상금의 성격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에 대해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1책12법이 있다.<sup>15)</sup>

조선시대에는 모반, 대역, 불효 등 유교질서를 해하는 범죄가 아닐 경우 돈, 즉 속전(贖錢)을 납부하고 형벌을 면하거나 감경을 수 있는 속전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범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강제하는 벌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고대의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에서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내지 속죄금의 사형벌(私刑罰)의 성격이 있었다. 이후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속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속죄금의 일부를 국가에 납입하게 하는 평화금제도가 나타나면서 공형벌(公形罰)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sup>17)</sup>

13) 김선복, 위의 책, 477면; 배종대, 「형사정책」(제8판), 홍문사, 2011, 427면; 임웅, 「형법총론」(제7정판), 법문사, 2015, 636면; 정영일, 위의 책, 528면.

14) 이병기·신의기,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7면; 배종대, 위의 책, 426면.

15) 안성훈,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제18권 제4호(통권 제39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314면.

16) 이창한, “조선시대 형벌제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경찰학회, 2010, 213면.

17) 안성훈, 위의 논문, 314면;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11, 563면.

## 2. 현대적 의의

벌금형은 과거 단기자유형의 폐해<sup>18)</sup>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벌금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자유형에 상응하는 형벌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sup>19)</sup> 단기자유형의 집행에 따른 범죄성 감염, 낙인효과, 탈사회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오판 시 회복이 용이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형은 상당한 위하력이 있는 형벌이다.<sup>20)</sup> 또한 벌금형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대가로만 얻을 수 있는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수 있다.<sup>21)</sup>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과실범의 증가, 법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등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보다 벌금형을 비롯한 재산형의 부과 영역을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sup>22)</sup> 자유형으로 처벌하기에 부적합한 범죄가 증가하고,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 자유형과 함께 주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sup>23)</sup>

18)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단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형벌이다. 하지만 시설 내에 구금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형자에 의한 범죄성 감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전과자라는 낙인, 사회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탈사회화, 수용시설의 과밀화 등의 문제들이 있다; 이주희, “일수벌금제도: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한양법학 제21권 제2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703면; 김선복, 위의 논문, 139-140면.

19) 김태우, 위의 논문, 150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4면.

20) 김성돈, 「형법총론」(제4판), 성균관출판부, 2015, 787면;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제12판), 박영사, 2014, 563면;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2014, 515면;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315면.

21) 안성훈, 위의 논문, 312면(각주5).

22) 신의기, 위의 논문, 101면.

23) 신의기, 위의 논문, 103면.

## 제2절 벌금형의 장단점

### I. 벌금형의 장점

#### 1.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대체수단

벌금형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게 한다는 것이다.<sup>24)</sup> 이는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아 단기자유형의 폐해 중 하나인 ‘탈사회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에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단기자유형은 시설내의 구금으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로 인한 ‘범죄성감염’, 범죄인이라는 ‘낙인효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단절하여 범죄인의 ‘탈사회화’,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한 수용시설의 과밀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sup>25)</sup>

하지만 벌금형은 자유형과 달리 시설 내 구금이 없어 이런 폐해들을 야기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아 특별한 사회복귀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위로부터 ‘수형자’라는 낙인이 찍혀 기피인물로 평가받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은 형벌의 제1차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인을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24) 신의기, 위의 논문, 104면; 정성근·정준섭, 위의 책, 415면.

25) 김선복, 위의 논문, 139-140면; 이주희, 앞위 논문, 703면

26)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1994, 21면;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벌금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0, 80면.

## 2. 법인범죄의 처벌에 유효

산업의 발달로 인해 법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져 갔다. 법인에 의한 범죄는 새로운 영역인 환경범죄, 기업범죄 등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자유형 중심이던 형벌체제는 법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하지 못하였다. 법인도 자연인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행위를 한 담당자만 처벌받는데 그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와 법인에게는 효과적인 처벌이 곤란한 실정이었다.<sup>27)</sup>

이에 법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커져갔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벌금형이 주목 받았다. 법인의 설립 및 운용의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할 때, 벌금형을 통한 수익의 박탈은 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는 법인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자연인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에 법인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sup>28)</sup>

## 3. 과실범과 이욕범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형법은 과실범이라는 형식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형법 제14조). 산업과 교통 등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주의의무를 요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에 과실범의 처벌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과실범은 고의가 없고 비난가능성이 약해 자유형으로 처벌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과실범을 자유형으로 처벌하게 되면 범죄성 감염, 낙인효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7)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2면.

28)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3면.

29) 강동범, 위의 논문, 81면.

이에 비해 벌금형은 금전적인 제재만을 가함으로서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중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어 과실범 처벌에 효과적 제재수단이 된다.<sup>30)</sup>

다른 한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금전적 욕망을 추구하려는 횡령죄, 배임죄, 도박죄, 장물죄, 조세범죄 등의 이욕범죄가 증가하였다. 이욕범죄는 부당 이득의 추구가 목적이므로 그 목적에 상응하는 금전적 박탈을 가하는 것이 형벌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그러므로 이욕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형보다는 현실적인 손실을 가하는 벌금형이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다.

#### 4. 오판 시 원상회복 가능

모든 재판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오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원상회복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명형과 자유형은 신체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형벌이므로 집행이 된 이후에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데 그칠 뿐이며, 오판에 대한 현실적인 회복은 어렵다. 그러나 벌금형은 금전적 박탈을 가하는 형벌이므로 오판 시 원상회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오판으로 인해 박탈된 금전적 손실은 납부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와 보상을 통해 그대로 회복이 가능하다.<sup>32)</sup>

30)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4면 참조.

31) 강동범, 위의 논문, 81면.

32) 강동범, 위의 논문, 82면;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7면; 정성근·정준섭, 위의 책, 415면.

## 5. 형벌효과의 참신성

자유형은 반복하여 부과할 경우 수형자를 형에 익숙하게 하여 형벌의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벌금형은 반복하여 부과더라도 자유형에 비해 형벌감응성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강점을 가진다.<sup>33)</sup>

금전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재화이므로, 현실적으로 금전을 빼앗기게 되는데 대해 고통을 느끼며 이는 심리적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반복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고 하더라도 금전의 속성상 익숙해지고 적응되지 않아 형벌의 위하가 약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sup>34)</sup> 또한 벌금형은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범죄자에게 주기적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 납부기간동안 위하효과를 주어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sup>35)</sup>

## 6. 집행의 경제성과 절차의 간편성

자유형은 범죄인을 시설 내 구금함으로서 구금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많은 인적·물적 비용이 필요하지만, 벌금형은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집행·징수에 따르는 비용 외에는 별도의 집행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용시설 내의 처우가 없다보니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 구금시설의 확충에 드는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sup>36)</sup>

또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집행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국고수입을 증대시켜 국가의 재정운영을 용이하게 할 장점이 있다.

33)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30면.

34)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9면.

35) 강동범, 위의 논문, 81면.

36)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7면; 정성근·정준섭, 위의 책, 415면.



최근 벌금형의 실제 조정액수는 2011년 약 31조, 2012년 약 30조8천억, 2013년 약 30조2천억, 2014년 약 30조3천억, 2015년 약 30조4천억으로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다.<sup>37)</sup> 이 많은 수입들을 범죄예방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구금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자유형집행에 있어도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sup>38)</sup>

반면 벌금형은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공판보다는 약식절차를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 약식절차<sup>39)</sup>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다르게 구두변론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법정에서 나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명예의 보호 측면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약식절차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sup>41)</sup>할 경우 공판절차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는다.<sup>42)</sup> 이에 벌금형과 약식절차의 조합은 재판의 경제성과 절차적 효율성 측면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37)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6, 962면; 그러나 실제 현금으로 납입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약 4%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11년 약 1조3천억, 2012년 약 1조4천억, 2013년 약 1조4천억, 2014년 1조5천억, 2015년 약 1조4천억이다.

38) 강동범, 위의 논문, 82면;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8면.

39)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40) 이병기·신의기, 위의 논문, 29면.

41)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42)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29면.

43) 양광해, “벌금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36면.

## II. 벌금형의 단점

### 1.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

벌금형의 한계이자 가장 큰 단점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같은 금액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효과는 매우 달라진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가난한 자에게는 납입하기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고, 부유한 자에게는 납입하기 쉬운 금액이 되는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sup>44)</sup> 이는 경제적 차이로 인해 누구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되고, 누구에게는 가벼운 형벌이 된다는 것이다. 즉 부유한 자에게는 ‘돈만내면 된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벌로 인식되어 형벌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sup>45)</sup>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환형 유치되어 자유형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나타난 벌금형이 다시 단기자유형으로 환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벌금형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sup>46)</sup> 결국 범죄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노역장유치로 전환되고, 부유한 자에게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총액으로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형벌이 경제적인 이

44) 강영철, “재산형<벌금>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0호, 한국교정학회, 2008, 12면; 한정환, 「형법총론」(제2권), 동방문화사, 2017, 425면.

45) 신의기, 위의 논문, 105면; 이재상, 「형법총론」(제6신판), 박영사, 2010, 568면.

46) 강영철, 위의 논문, 23면;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538면.

유로 형벌효과가 달라진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sup>47)</sup> 생각건대, 형사제재로서 벌금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금의 액수가 개별 범죄자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범죄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악영향

벌금형은 일정금액의 납입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범죄인의 재산을 박탈함으로써 경제적 부자유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재산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48)</sup> 즉 범죄인이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주어 가족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범죄인을 사회에 둠으로써 사회적응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족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가 범죄인의 교정·교화의 책임을 가족에 떠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벌금형이 단기자유형을 대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범죄인으로부터 범죄성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범죄인의 범죄성이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sup>49)</sup>

## 3. 제3자의 대납 가능성

벌금형은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일신전속(一身專屬)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제3자가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50)</sup>

47) 신의기, 위의 논문, 110면; 한정환, 위의 책, 425면.

48) 강동범, 위의 논문, 84면;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33면.

49)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33면.

그러나 현실은 가족이나 친지 등의 제3자가 대신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대납이 허용되고 있다.<sup>51)</sup> 사실상 벌금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중립적인 금전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일신전속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납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벌금형자체가 타인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만큼 형벌로서의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금전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벌금형의 본질상 한계라고 할 수 있다.<sup>52)</sup>

#### 4. 사회보호 및 일반예방효과 미흡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자유형은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여 사회를 보호한다. 반면 벌금형은 금전의 박탈이라고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뿐이므로 여전히 범죄자가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금형은 사회에 대한 보호기능과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가 약한 측면이 없지 않다.<sup>53)</sup>

다시 말해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 이외에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같은 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으므로 범죄자로부터의 사회보호 기능에 취약하다. 형사 제재의 중대성과 확실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욕구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의 확보에 기여한다. 하지만 처벌의 중대성, 즉 엄격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액수의 벌금이라도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일반예방효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벌금형의 현실적인 집행률 저조현상은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일반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된다.<sup>54)</sup>

50) 김선복, 위의 책, 477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3면; 정성근·정준섭, 위의 책, 415면.

51) 신의기, 위의 논문, 107면.

52) 고요석, 위의 논문, 27면.

53)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33-34면.

## 제3장 현행 벌금형제도와 문제점

### 제1절 현행 벌금형 관련 규정과 선고 현황

#### I. 현행 벌금형 관련 규정

##### 1. 형법 규정

벌금은 벌금액을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형법 제45조). 다만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에서 상한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의 납입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제69조 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제69조 2항).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제70조 1항). 만약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70조 2항). 현행 형법은 벌금형의 양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형에 관한 일반 기준인 형법 제51조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sup>55)</sup>는 물론이고, 형법 개정에 따라서 2018년 1월 7일부터 집행유예<sup>56)</sup>도 가능하다.

54) 이병기·신의기, 위의 연구보고서, 34면.

55)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6)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만약 가석방 요건으로서 벌금형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며(제72조 2항),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 요건 고려 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 2항). 벌금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제78조).

## 2. 형사소송법 규정

벌금형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며(제477조 제1항),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77조 제2항). 재산형 등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477조 제3항),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제477조 제4항). 검사는 집행을 위하여 제199조 제2항<sup>57)</sup>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477조 제5항). 또한 2016년 1월 6일 벌금형의 납부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477조 6항이 신설<sup>58)</sup>되어 부칙에 따라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92조). 따라서 검사는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하거나 형집행장<sup>59)</sup>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제473조). 이때의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74조 제2항),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7)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8)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6.>

59)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의 발부요건은 납부의무자의 1)소환불능 2)도망·도망의 염려 3)소재불명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공판 및 형집행 실무, 1998, 357면.(김현숙, “벌금형과 보호관찰의 쟁점: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49면에서 재인용)

### 3.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규정

벌금형 집행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재산형 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벌금을 조사·결정하는 조정을 하여야 하며(규칙 제6조), 벌금이 조정되면 검사는 납부의무자(즉시 납부한 경우 제외)에게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 만약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12조).<sup>60)</sup>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

60)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 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실무상 납부독촉서(1차)는 발부일로부터 15일을 더한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납부독촉서(1차) 발송 후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출국금지 등을 한 상태에서 납부기한을 즉시로 하는 납부독촉서(2차)가 발송된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명수배·검거, 재산압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한다.<sup>61)</sup> 이에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규칙 제17조) 또는 노역장유치집행(규칙 제20조)의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서 벌금형은 징수금 조정, 납부명령, 납부독촉, 강제집행, 노역장유치 순으로 집행된다.

## II. 벌금형 선고 현황

### 1. 1심 형사공판 벌금형 선고 현황

2015년 기준 5년간 제1심 형사공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평균 30.8%에 달한다.

< 제1심 형사공판 벌금형 선고 현황 ><sup>6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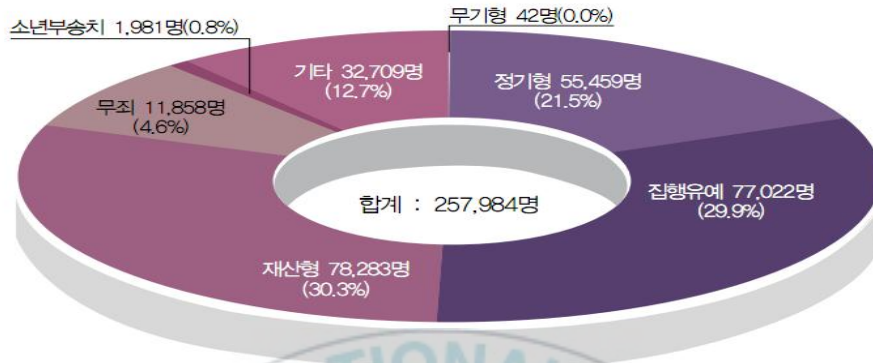
	2011	2012	2103	2014	2015
처리인원	278,169명 (100%)	287,883명 (100%)	260,155명 (100%)	267,077명 (100%)	257,984명 (100%)
벌금형	85,449명 (30.7%)	85,264명 (29.6%)	81,442명 (31.3%)	85,606명 (32.1%)	78,283명 (30.3%)

61) 서효원, “벌금형 집행의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61-262면.

6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327면.



< 2015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인원 구성비 >63)



2. 약식절차 벌금형 선고 현황

2015년 기준 5년간 약식절차 사건 중 벌금형 선고 비율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 평균 94.7%에 달한다. 특히 2015년에는 97.8%로 가장 높았고, 전년도에 비해 벌금형 선고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 현황 >64)

	2011	2012	2103	2014	2015
처리인원	797,497명 (100%)	726,641명 (100%)	752,065명 (100%)	703,810명 (100%)	664,833명 (100%)
벌금형	736,888명 (92.4%)	660,974명 (91.0%)	716,787명 (95.3%)	682,564명 (97.0%)	650,123명 (97.8%)

6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328면에서 재인용.

6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351면.

### 3. 즉결심판 벌금형 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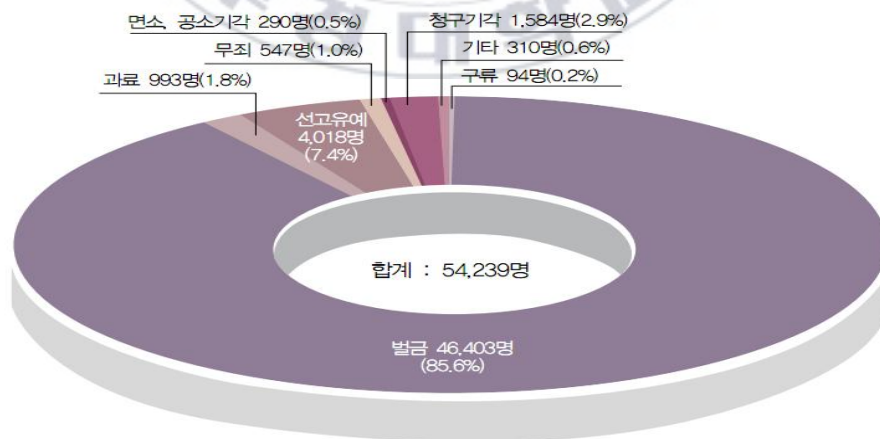
2015년 기준 5년간 즉심심판에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매년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결심판 벌금형 선고 현황><sup>65)</sup>

	2011	2012	2103	2014	2015
처리인원	56,324명 (100%)	53,048명 (100%)	56,098명 (100%)	46,435명 (100%)	54,239명 (100%)
벌금형	47,375명 (84.1%)	45,946명 (86.6%)	49,665명 (88.5%)	40,898명 (88.1%)	46,403명 (85.6%)

2015년을 기준으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선고로 처리된 인원 구성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015년 즉결심판사건 처리 인원 구성 ><sup>66)</sup>



6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354면.

6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354면에서 재인용.

## 제2절 벌금형의 개선을 위한 신설 규정과 한계

### I.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신설

#### 1. 의의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형법 제65조). 이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67)</sup> 과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자 보니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미한 범죄인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벌금형이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벌이 될 수 있다.<sup>68)</sup>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도입하자는 견해<sup>69)</sup>와 개정안<sup>70)</sup>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67) 이강민,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교정연구 제71호, 한국교정학회, 2016, 107면.

68) 이승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105면;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1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72면.

69) 김일수·서보학, 위의 책, 598면; 강영철, 위의 논문, 16면; 배종대, 위의 책, 430면;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3면;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89면; 한영수, “보호관찰 조건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 제6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06, 6면.

70) 1992. 7. 7. 정부발의, ‘형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140013); 1996. 11. 21. 정부발의, ‘형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150346); 2011. 3. 25. 정부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11304); 2012. 7. 26.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0890); 2013. 11. 20. 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7911); 2014.5.8.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0524); 2015. 6. 8.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5498); 2015. 7. 14.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6069).

이후 형법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sup>71)</sup>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도입의미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총액벌금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벌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미한 범죄인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를 집행이전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2)</sup>

## 2. 비판적 검토

### (1)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의 개선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라 규정되어 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함에 있어 우선 형법 제51조<sup>73)</sup>의 양형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양형의 조건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sup>74)</sup> 벌금형의 경우 재산형이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71)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 2018. 1. 7.>  
 형법 제62조의 개정이유는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다.
- 72) 김정환,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과 보완”, 보호관찰 제16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66면.
- 73)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74) 김정환, 위의 논문, 74면.

또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억제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유로 도입되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는 규정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에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75)</sup>

## (2)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개선의 필요성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 중 부과된 준수 사항을 지켜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 이는 곧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을 둔 집행유예가 과연 3년 이하의 자유형과 동일한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sup>76)</sup>

3년 이하의 자유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형벌로 비교하여 볼 때 벌금형은 자유형에 비해 경한 형벌이고, 경미한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너무 장기적이라 생각된다. 동일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한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건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최장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단기는 6개월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77)</sup>

75) 한영수, 위의 논문, 21면.

76) 한영수, 위의 논문, 23면.

77) 본 견해와 유사한 맥락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상한을 3년 이하로 단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한영수, 위의 논문, 23면 참조.

### (3) ‘일부 집행유예’ 도입의 필요성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통설과 판례<sup>78)</sup>의 입장이다. 형법 제62조 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 한해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유예’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79)</sup>

만약 벌금형의 전부를 유예하기에는 너무 경한 형벌이 되고 형의 전부를 집행하기에는 중한 형벌이 될 때, 그 일부만을 집행유예 함으로써 적당한 기준에 맞게 선고될 수 있다.<sup>80)</sup> 즉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300만원의 벌금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00만원의 벌금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는 벌금형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재산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부에 대해 형을 집행함으로써 형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유예기간 동안 규범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어 예방효과를 함께 가지는 장점이 있다.<sup>81)</sup> 또한 벌금형에 대해 일부유예 받으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탄력성을 있게 시행될 수 있다고 본다.

### (4)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에 대한 검토

형법 제62조의2에 의해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78)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79)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형사정책연구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93면;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3면; 윤동호,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78면; 이승준, “형의 일부집행유예” 외법논집 제2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40면; 최정학, 위의 논문, 91면.

80) 한영수, 위의 논문, 28면.

81) 서보학, 위의 논문, 93면; 최정학, 위의 논문, 91면.

수강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활용하면 사회복귀와 범죄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82)</sup> 반면 부과 처분 없이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는 경우 형벌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업무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sup>83)</sup>

이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절차에 대해 시행을 앞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지만,<sup>84)</sup> 만약 약식명령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면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의 업무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sup>85)</sup> 이에 소액의 벌금과 같이 경미한 경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부과하지 말자는 견해<sup>86)</sup>와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만을 두자는 견해<sup>87)</sup>도 있다.

생각건대 경미한 벌금형에 대해 부수처분을 하지 않고,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만 둔다면 보호관찰업무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만으로도 부수처분의 취소 시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부담을 주어 형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다.<sup>88)</sup>

82) 최정학, 위의 논문, 91면; 한영수, 위의 논문, 13면.

83) 김종덕, “벌금형 집행율의 제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315면; 윤동호, 위의 논문, 76면.

84) 김정환, 위의 논문, 68면; 윤동호, 위의 논문, 67면; 서효원, 위의 논문, 267면.

85) 윤동호, 위의 논문, 66면.

86) 최정학, 위의 논문, 91면.

87) 윤동호, 위의 논문, 75면.

88) 윤동호, 위의 논문, 74면.

## II. 벌금형의 분납·연납 및 신용카드의 납부

### 1. 의의

벌금형의 분납 연납제도는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는 제도이다.<sup>89)</sup>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징수가 가능하여 납부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sup>90)</sup>

하지만 과거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보니 분할납부 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러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납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sup>91)</sup> 이에 상위법으로 법정화하자는 견해<sup>92)</sup>와 개정안<sup>93)</sup>들이 다수 발의되었고,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6항<sup>94)</sup>을 신설하여 2016년 1월 6일 법률로 규정되게 되었다.

89) 조규범, 위의 보고서, 74면.

90) 그러나 분할납부의 단점으로는 분납하는 경우 일정기간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어 벌금형의 형벌효과가 상실될 우려, 분납과 연납을 신청하는 범죄인의 자격조사 업무로 인한 집행기관의 부담 증가, 벌금집행절차의 복잡화와 그로 인한 효율성 저하, 벌금형의 장점인 즉각적인 형벌효과 약화 등이 있다; 강영철, 위의 논문, 15면;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57면.

91) 2014.11.20,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83).

92) 강영철, 위의 논문, 15면;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58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74면; 최정학, 위의 논문, 87면.

93) 2012. 7. 26.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889); 2014. 5. 8,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0524); 2014. 11. 20,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583); 2015. 6. 8,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5498); 2015. 7. 14,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073).

94)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18. 1. 8.>



이와 더불어 현재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sup>95)</sup>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께 개정되었다.<sup>96)</sup> 벌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분할납부제도는 이후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부의무자의 노역장유치를 억제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여 벌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개정이라 생각된다.<sup>97)</sup>

## 2. 비판적 검토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6항이 신설되어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를 통해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납입의무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한 후 정상적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신용카드회사가 벌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납입의무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도 강제할 수 없는 경우가 초래될 문제가 있다.<sup>98)</sup>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을 법무부령, 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에 위임하고 있다.

이 규칙 제12조 제1항은 분할납부·연기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95)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 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96) 서효원, 위의 논문, 272면.

97) 서효원, 위의 논문, 274면.

98) 서효원, 위의 논문, 274면.

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sup>99)</sup> 이에 실제 분할납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sup>100)</sup> 분할납부 등의 허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백만원의 현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sup>101)</sup>

나아가 규칙 제12조 제3항<sup>102)</sup>에서 분할납부 등의 기한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분할기간도 부담이 되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의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103)</sup> 따라서 허가대상과 분할납부 등의 기간을 확대하여 납부의사가 있는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99)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 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100)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57면; 최정학, 위의 논문, 87면.

101) 서효원, 위의 논문, 274면.

102)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03)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59면.

### 제3절 노역장 유치처분의 문제점

#### I. 의의

노역장유치제도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미납자에게 판결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는 것으로 벌금형에 대한 환형 처분이다.<sup>104)</sup>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은 이중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치일수만큼 벌금이 탕감되므로 벌금납입을 대체하는 수단이지만, 이와 더불어 벌금납입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을 함께 한다.<sup>105)</sup> 따라서 형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에는 벌금납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노역장유치를 규정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에서는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으로서 노역장유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6)</sup> 오늘날 노역장유치는 벌금납입을 강제하거 대체함으로서 벌금형의 효율적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104) 헌법재판소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벌금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벌금형의 형벌효과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노역장 유치는 벌금납입을 대체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또한 사회봉사특례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고, 집행사무규칙에 의하여 벌금의 분납·연기신청이 가능하며, 노역장유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188; 2011헌바91·151(병합))

105) 강영철, 위의 논문, 19면;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벌금양형”,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198면;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바188 결정에서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은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순간 유치일수만큼 벌금액이 탕감되므로 원칙적으로 벌금 납입의 대체수단이지만, 벌금미납자에게 벌금납입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납입강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였다.

106) 이경렬, “미납벌금의 대체형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의 도입 문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65면.

## II. 노역장유치의 문제점

### 1.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

현행법상 벌금미납자에게 부과되는 노역장유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 형벌의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sup>107)</sup> 사실상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납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미한 범죄인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가난이 곧 형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법적 효과가 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8)</sup>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람까지 경제적 빈곤의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합리하다. 또한 노역장유치는 자유형의 수형자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용되다 보니 범죄적 악성감염과 낙인 효과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sup>109)</sup> 이는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나타난 벌금형이 단기자유형으로 환형시키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한다.<sup>110)</sup>

107) 배종대, 위의 책, 428면; 김중덕, 위의 논문, 326-327면; 강영철, 위의 논문, 22면; 최정학, 위의 논문, 92면; 오경식,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 법학논총, 제20집 제2-2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535면.

108) 안성훈, 위의 논문, 322면(각주30);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6면.

109) 배종대, 위의 책, 428면; 강영철, 위의 논문, 23면.

110) 강영철, 위의 논문, 23면; 이경렬, 위의 논문, 465면; 정성근·정준섭, 위의 책, 416면.

## 2. 노역장 유치의 증가와 수용시설의 과밀화

현재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노역장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노역장유치 건수를 보면 2013년 3만5733건, 2014년 3만7692건, 2015년 4만2689건, 2016년 4만2669건에 달한다고 한다.<sup>111)</sup> 이번년도 7월까지의 노역장유치는 건수는 3만1351건으로 월평균 4479건이 노역장유치로 벌금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sup>112)</sup>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약 5만 건이 넘는 노역장유치가 예상된다.



111) 2017. 9. 12.일자 법률신문 기사 “전주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시행”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050>)참조.

112) 2017. 9. 23.일자 한국경제 기사 “서민불황의 그늘... ‘벌금 대신 노역장’ 올 5만명 넘을 듯”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259441>)참조.

113) 2017. 9. 23.일자 한국경제 기사 “서민불황의 그늘... ‘벌금 대신 노역장’ 올 5만명 넘을 듯”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259441>)에서 재인용.

이런 증가추세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실제 우리나라 수용률을 보면, 2013년 104.2%, 2014년 107.2%, 2015년 114.8%, 2016년 120.3%이고, 올해인 2017년 4월 기준 평균 수용률은 123.1%에 이르고 있음을 아래의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교도소 수용현황 >114)

	2013	2014	2015	2016	2017.4
수용정원	45,990명	46,780명	46,950명	46,950명	47,000명
일평균 수용인원 (전년대비)	47,924명 (2,436명)	50,128명 (2,204명)	53,892명 (3,764명)	56,495명 (2,603명)	57,865명 (1,370명)
수용률 (100%)	104.2 %	107.2 %	114.8 %	120.3 %	123.1 %

수용정원이 4만7000명인데 하루 평균 5만7865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수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 수용률인 97.6%보다 25.5%가 높다.<sup>115)</sup> 우리나라 평균 수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용시설의 과밀화의 원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증가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노역장유치자의 증가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sup>116)</sup>

114) 2017. 8. 17.일자 파이낸셜 기사, “한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수용율 OECD 2위” (<http://www.fnnews.com/news/201708171002559014>)에서 재인용.

115) 2017. 8. 18.일자 한국경제 기사 “포화상태에 달한 교도소 수용률 121%…OECD 2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756461>) 참조.

116) 강영철, 위의 논문, 23면.

노역장유치자의 증가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낳고, 이에 파생하여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는 수용환경의 열악화, 수용자의 인권침해<sup>117)</sup>, 분리 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지처우곤란, 교정업무의 과중, 각종 수용비용 및 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sup>118)</sup>

### 3.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기준의 부재

헌법상 노역장유치는 미납된 벌금액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노역장유치 기간과 1일당 환산금액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sup>119)</sup> 과거 2004년 ‘황제노역사건’<sup>120)</sup>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고액벌금형을 단기간 노역장유치만으로 면제받지 못하도록 노역장유치의 환산금액의 하한을 제한하자는 ‘형법일부개정안’<sup>121)</sup>이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5월 14일 공포·시행되었다.<sup>122)</sup>

117)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교정시설 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118) 강영철, 위의 논문, 24면.

119) 이상한, 위의 논문, 287면; 안성훈, 위의 논문, 323면.

120) 前 대주그룹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벌금 약 254억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 일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1일 환산금액이 5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다.

121) 2014. 4. 28. 법제사법위원회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0351).

122)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1일당 환산금액은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형법상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장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미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남아있다.<sup>123)</sup> 또한 개정 형법은 노역장유치 일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백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환형유치일당이 수천만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sup>124)</sup> 아울러 노역장 유치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벌금잔액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치기간만 경과하면 벌금잔액이 탕감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sup>125)</sup>

이는 고액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재산을 빼돌린 채 고의적으로 노역장유치를 받게 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벌금을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벌금의 면제로 인해 파악해야 할 잔액이 없어지므로 고액벌금형 선고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sup>126)</sup> 이처럼 개정 형법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이 고액벌금형 선고자의 집행 면제수단이 아닌지, 고액벌금형 선고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제노역’ 논란이 계속되었고,<sup>127)</sup> 이에 대한 방안으로 노역장유치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자는 ‘형법일부개정안’<sup>128)</sup>과 노역장유치 1일 환산액의 상한액을 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 3년이 경과한 경우 남은 벌금잔액을 별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형법일부개정안’<sup>129)</sup>이 발의되어 있다.<sup>130)</sup>

123)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7면.

124) 조규범, 위의 보고서 23면; 안성훈, 위의 논문, 323면.

125) 고요석,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18면.

126) 고요석, 위의 논문, 118면.

127) 전두환 前대통령의 아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로 벌금 40억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아 하루일당 400만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또한 최근 벌금 24억원과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48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 또다시 ‘황제 노역’ 논란이 있었다. 2017. 9. 21.일자. 연합뉴스TV “또 일당 480만원 ‘황제노역’..방지법안은 감감무소식”(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921002300038/?did=1825m)

128) 2016. 7. 7.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722).

129) 2016. 11. 29.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44).



## 제4절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

### I. 현행 벌금형제도의 의의

형법 제45조는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상 벌금의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형법각칙의 개별 구성요건에서 범죄별 벌금형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벌금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총액으로만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를 취하고 있다. 총액벌금제도는 각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선고하는 제도이다.<sup>130)</sup>

현행 벌금형제도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같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라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체감정도가 달라진다.

벌금형은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부유한 자의 입장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덜한 형벌이 되어 ‘돈만 내면된다’는 사소한 형벌이 될 우려가 있다. 반면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의 박탈이 매우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벌금형제도가 과연 형벌로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30)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노역장유치를 통해 벌금형을 사실상 장기 자유형으로 변경시키거나, 고액 벌금액 납부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노역장유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서효원, “벌금형 집행의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279면.

131) 이기현,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형사정책연구원, 2007, 492면.

## II. 총액벌금제도의 문제점

### 1. 형벌효과의 불평등

현행 벌금형제도는 양형에 관한 일반 기준인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sup>132)</sup> 외에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죄질을 기준으로 한 총액벌금제도는 개별 범죄자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소득과 재산은 같을 수 없다. 예컨대 부유한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액수의 벌금일지이라도, 빈곤한 사람에게는 벌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며 결국에는 벌금의 납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결국 벌금을 납입할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납입을 하지 못한 경우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총액벌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sup>133)</sup>

동일한 불법과 동일한 책임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부유한 자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희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sup>134)</sup> 현행 벌금형제도는 부유한 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아 형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는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환형 유치되어 단기자유형이나 다름없는 신체의 구속을 당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될 수도 있다는 불평등한 구조이다.

132)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33) 배종대, 「형법총론」(제13판), 홍문사, 2017, 578면; 안성훈, 위의 논문, 321면; 신의기, 위의 논문, 110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121면;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5면; 강영철, 위의 논문, 12면; 한정환, 위의 책, 425면.

134) 신의기, 위의 논문, 110면.

## 2. 단기자유형화

형법은 벌금형의 환형처분으로 노역장유치를 규정하고 있어(형법 제69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현행 벌금형제도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인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가 형법이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5)</sup>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단기자유형이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난이 곧 형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법적효과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36)</sup> 즉 부유한자는 돈으로 납부하고 가난한자는 신체로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sup>137)</sup>

또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자보니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자들이 증가하고 이는 곧 노역장유치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현행 벌금형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나타난 벌금형을 단기자유형으로 환형시키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sup>138)</sup>

## 3. 경제사정 변화의 미반영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인상되어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벌금형도 그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 재산의 박탈을 수단으로 하는 벌금형이 변화하는 경제사정과 물가인상에 대체하지 못한다면 형벌로서의 위하는 당연히 약화되기 마련이다.<sup>139)</sup>

135)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6면.

136) 안성훈, “현행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322면(각주30); 서주연·최영신, 위의 연구보고서, 66면.

137) 신의기, 위의 논문, 110면.

138) 강영철, 위의 논문, 23면; 이경렬, 위의 논문, 465면; 정성근·정준섭, 위의 책, 416면.

또한 2010년 형법의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30년으로 상향하는 등 자유형의 형기가 전체적으로 연장되었지만, 벌금형의 상한선은 변화가 없어 자유형과의 차이는 더 커졌다. 그러나 벌금형의 액수가 총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sup>140)</sup> 이는 벌금형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up>141)</sup>

### Ⅲ. 소결

현행 벌금형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효과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형벌로서의 위하가 약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벌금형제도가 총액벌금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벌금미납 시 노역장에 환형 유치되는 규정을 하고 있다(형법 제69조). 이는 곧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만연시키는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을 하지 못하면, 결국 노역장 유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벌금형의 단기자유형화로 이어진다. 즉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써 기능을 하는 벌금형이 그 활용을 통해 얻고자 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sup>142)</sup>

139)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62면.

140) 서보학, 위의 논문, 76면; 최호진, 위의 논문, 262면.

141) 강동범, 위의 논문, 86면.

142) 안성훈, 위의 논문, 322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의 차이가 커지고, 이로 인해 돈의 가치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형의 위하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벌금형제도에 있다. 이에 총액벌금제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하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제4장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검토

### 제1절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

#### I. 일수벌금제도의 의의

일수벌금제도는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sup>143)</sup> 다시 말해서 일수벌금제도는 불법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이다.<sup>144)</sup> 이 제도는 총액벌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당한 벌금형을 선고하여 ‘희생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sup>145)</sup>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효과와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46)</sup>

일수벌금제도는 총액벌금제도와 달리 양형의 과정을 2단계로 분리하여, 1단계에서는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양형사실과 행위의 중대성을 기초로 하여 ‘벌금일수’를 결정한다. 일수의 산정은 일반적인 양형의

143) 김선복, 위의 책, 477면; 배종대, 위의 책, 578면; 정성근·정준섭, 위의 책, 416면.

144) 반면 배수벌금제는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기준, 즉 ‘이득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낸다’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미 현행법에서 채용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의 법률에서 채택하고 있다. 배수벌금제는 개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벌금의 상한이 사안에 따라 변동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형사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정배, “벌금형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배수벌금과 물가 연계 벌금을 중심으로”, 국회보 통권 제558호, 2013, 116면.

145) 이상한, 위의 논문, 289면.

146) 신의기, 위원 논문, 114면.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행위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자유형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가정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47)</sup>

2단계에서는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일 납부 가능한 평균 금액으로 '1일 벌금액'이 결정된다. 이후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sup>148)</sup> 즉 “피고인을 100일의 일수로 하여 일일 정액 100,000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총 납입할 벌금액은 10,00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수와 벌금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즉시 납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일시납부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납부완화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sup>149)</sup>

현재 일수벌금제도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스웨덴(1931), 덴마크(1939)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기점으로 하여, 1975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1983년 프랑스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sup>150)</sup>

## II. 일수벌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벌금형제도는 일정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로써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형벌효과의 불평등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수벌금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한 형벌의 위하를 줄 수 있다.

147) 안성훈, 위의 논문, 324면.

148) 오경식, 위의 논문, 536면.

149) 신의기, 위의 논문, 115면; 안성훈, 위의 논문, 324면.

150) 이상한, 위의 논문, 289면; 이기현, 위의 논문, 493면.

일수벌금제도는 첫째로 개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벌금형이 부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등한 형벌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대체자유형의 집행가능성을 감소시켜 단기자유형의 폐해로부터 벌금미납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sup>151)</sup>

둘째, 벌금의 부과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킨다.<sup>152)</sup>

셋째, 불법과 책임이 동일한 행위를 범죄일수로 산정하고 1일의 벌금액을 평가할 때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관에 따라 다른 양형상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sup>153)</sup>

넷째,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일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벌금미납시 환형유치에 대한 환산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즉 일수와 대체자유형이 일대일의 비율에 의해 간단히 산출될 수 있다.<sup>154)</sup>

다섯째, 가난한 자에게는 벌금형이 너무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국가형벌의 엄준함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워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sup>155)</sup>

---

151) 오경식, 위의 논문, 540면; 최호진, 위의 논문, 269면.

152) 신의기, 위의 논문, 101면.

153) 최호진, 위의 논문, 270면.

154) 신의기, 위의 논문, 116면.

155) 최호진, 위의 논문, 269면.



### Ⅲ. 형법개정안과 학계의 논의

일수벌금형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현행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형사제재로 평가받으면서 이를 도입하여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벌금형을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는 논의가 있어왔다.

#### 1. 형법개정안

과거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가 있었고, 1995년 형법 개정 당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도입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sup>156)</sup> 이후 2004년 사법제도개혁위원회, 2008년 검사의 전국민생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도입되지는 못하였다.<sup>157)</sup> 2009년 제18대 국회에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해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1806718)<sup>158)</sup>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06719)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56) 정승환,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형사법의 신동향 제37호, 대검찰청, 2012, 316면.

157) 조규범, 위의 보고서, 51면.

158) 2009. 11. 26.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806718); 제2조(벌금형의 산정) ①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65일 이하로 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한다. ②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벌금형의 1일 일수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법원은 판결 당시의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생활비, 부양의무,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일 일수정액을 정한다. ③ 법원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1일 일수정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벌금형의 일수와 1일 일수정액은 판결서에 기재한다.

특히 2011년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적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산 상태에 관한 충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우려”<sup>159)</sup>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19대 국회에서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다수발의 되었는데, 2013년 5월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로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1904978)<sup>160)</sup>이 발의되었고, 7월에는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5935),<sup>161)</sup> 8월에는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6404)<sup>162)</sup>이 발의되었지만 대안반영폐기되었다.

159)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 53면.

160) 2013. 5. 15.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로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04978); 제3조(일수벌금형의 선고) 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을 고려하여 일수벌금형의 일수를 선고한다. 이 경우 일수는 1일 이상 365일 이하로 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수정액을 정한다. 이 경우 피고인의 종합적 수입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정하되,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일수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수입, 재산 상태 등 피고인의 상태 및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등도 고려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일수와 일수정액을 판결에 기재한다.

161) 2013. 7. 10.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05935) 제45조의2(일수벌금) ① 어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위자의 교화 또는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수입(이하 “평균수입”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법원은 일수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평균수입 및 그 밖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여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 기준 및 그 밖에 벌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직종별 임금실태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62) 2013. 8. 16.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404) 제45조의2(일수벌금) 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위자의 교화 또는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180일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수입(이하 “평균수입”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일수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평균수입 및 그 밖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여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 기준 및 그 밖에 벌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직종별 임금 실태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후에도 2014년 5월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0524)<sup>163)</sup>과 2015년 7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6069)<sup>164)</sup>등이 발의되었지만 반영되지 못하였다.<sup>165)</sup> 이처럼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일수벌금제도는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은 발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은 아니지만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각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참작하자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sup>166)</sup>이 현재 서류 중에 있다.



163) 2014. 5. 8.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0524)  
제45조의2(일수벌금) 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교화 또는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365일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벌금액은 피고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수입(이하 “평균수입”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1일수의 벌금액은 1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일수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평균수입 및 그 밖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1일 벌금액 산정 기준 및 그 밖에 벌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직종별 임금 실태, 재산상태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164) 2015. 7. 14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6069)  
제45조(벌금) ① 벌금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할 때에는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②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은 1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및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5) 조규범, 위의 보고서, 51-52면.

166) 2017. 9. 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178).

## 2. 학계의 논의

학계에서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sup>167)</sup>가 다수이지만, 이에 반해 일수벌금제도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재산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sup>168)</sup>도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일수벌금제도에 대한 찬성의 견해와 반대의 견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찬성 의견에 대한 검토

일수벌금제도를 도입에 찬성하는 주된 견해는 총액벌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9)</sup> 즉 일수벌금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맞게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형벌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벌금형의 본질은 일정금액을 박탈하여 경제적 부자유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동등한 금액이 아니라 동등한 경제적 부자유를 주어야 한다.<sup>170)</sup>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소득과 재산의 불균형이 생기고 같은 금액이라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 부유한 자에게는 형벌효과를 달성할 수 없고, 가난한 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는 문제

167) 김종덕, 위의 논문, 311면; 이주희, 위의 논문, 704면;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7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8면; 오경식, 위의 논문, 550면; 이상한, 위의 논문, 291면; 정승환, 위의 논문, 336면; 배종대, 위의 책, 578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15, 569면; 반면 도입에는 찬성하나 충분한 준비가 된 이후에 도입하자는 견해로는 신의기, 위의 논문, 130면; 강동범, 위의 논문, 90면; 또한 총액벌금제도와 함께 운영하자는 견해로는 안성훈, 위의 논문, 336면; 최정학, 위의 논문, 87면; 최호진, 위의 논문, 275면.

168)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2면; 이기현,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518면.

169) 최호진, 위의 논문, 268면; 안성훈, 위의 논문, 333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52면.

170) 안성훈, 위의 논문, 333면.

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합한 벌금형이 부과되면 부유한 자에게는 형벌의 엄준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특별예방효과를 증대시키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sup>171)</sup>

나아가 찬성 측 견해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면 적합한 벌금형이 부과되어 벌금의 미납가능성을 줄여 노역장유치를 억제할 수 있고, 단기자유형의 폐해로부터 벌금미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2)</sup> 또한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일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벌금미납 시 노역장유치 기간의 환산기준을 벌금일수와 일대일 비율에 의해 간단히 산출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sup>173)</sup>

그리고 일수벌금제도는 벌금의 부과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벌금의 일수와 일반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sup>174)</sup> 불법과 책임이 동일한 범죄행위를 ‘일수’로 산정하고 ‘1일 벌금액’을 정할 때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판단을 제거함으로써 양형상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5)</sup>

## (2)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견해는 경제적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sup>176)</sup>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171) 최호진, 위의 논문, 273면.

172) 오경식, 위의 논문, 540면; 최호진, 위의 논문, 269면.

173) 신의기, 위의 논문, 116면.

174) 신의기, 위의 논문, 116면.

175) 최호진, 위의 논문, 270면.

176) 이기현, 위의 논문, 516면.

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여전히 고수입의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가 심할 뿐 아니라 지하경제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한다.<sup>177)</sup>

나아가 반대 측 견해로, 형벌은 범죄의 불법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범죄와 관련 없는 요소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한다.<sup>178)</sup> 또한 근본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형벌을 내리는 것이므로 외형상의 불균형은 오히려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인이 중한범죄를 범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sup>179)</sup> 그리고 경제적 능력의 지나친 강조는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 및 희생평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sup>180)</sup>

#### IV. 소결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두고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직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사정과 같이 범죄와 무관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등으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학계의 일각에서도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하지만 현행 총액벌금제도가 ‘형벌효과의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도입을

177) 이기현, 위의 논문, 516면.

178) 박기석, 위의 논문, 22면.

179) 이기현, 위의 논문, 514면; 신의기, 위의 논문, 119면.

180) 박기석, 위의 논문, 20-21면; 이기현, 위의 논문, 515-516면.

반대하는 견해의 논거 중 하나는 일수벌금제도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견해는 책임주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의 책임주의는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금지하는 것이지, 책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sup>181)</sup>

벌금형의 본질이 일정 금액의 박탈로 경제적 부자유를 주는 것이므로, 동등한 책임에 상응한다는 것은 동등한 금액이 아니라 동등한 경제적 부자유를 주는 것이다.<sup>182)</sup> 오히려 동등한 경제적 부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는 현행 총액벌금형제도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정확한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거로 들기도 한다. 물론 일수벌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변한 현실에선 다음과 같은 반박이 가능해보인다.

우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있어 개인의 자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재산 및 수입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sup>183)</sup>

또한 현재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또한 형사소송법<sup>184)</sup>에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sup>185)</sup> 그리고 판결 전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 사정을 파악하기 용이 할 것이다.<sup>186)</sup>

181) 신의기, 위의 논문, 101면.

182) 신의기, 위의 논문, 119면.

183) 안성훈, 위의 논문, 334면; 최호진, 위의 논문, 271면.

184)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185) 안성훈, 위의 논문, 334면; 최호진, 위의 논문, 271면.

벌금형은 재산형이다 보니 그 특성에 맞게 부과되어야 한다. 신체의 구속은 누구에게나 구속이지만, 금전적인 가치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벌금형은 얼마만큼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 되어야한다.<sup>187)</sup>

따라서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벌금형제도의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제2절 외국의 일수벌금제도의 도입과 시행

### I. 외국의 입법례

#### 1. 독일

독일은 1975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벌금형의 운영을 목적으로 형법상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 제도적 취지는 집행일수와 1일 벌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결정함으로써 벌금형의 양정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고인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었다.<sup>188)</sup>

독일의 벌금형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도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속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서 벌금형이 규정

186) 신의기, 위의 논문, 129면.

187) 최정학, 위의 논문, 80면.

188) 김성룡, “독일의 일수벌금형 운영 40년 결산이 주는 시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54호, 대검찰청, 2017, 159면.



되어 있지 않거나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유형의 선고와 병과할 수 있다.<sup>189)</sup> 또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독일 형법 제47조 2항).<sup>190)</sup> 즉 독일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6개월 이하의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독일의 벌금형은 형법 제40조<sup>191)</sup>에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여 일수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자유형과 같이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한다. 벌금일수는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최대 360일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독일 형법 제40조 제1항). 만약 수 개의 일수벌금형이 경합하여 하나의 벌금일수로 산정하는 경우 최대 72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독일 형법 제54조 제2항).<sup>192)</sup>

189) 독일 형법 제41조 (자유형에 병과되는 벌금형) 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자유형에 병과하여 법률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190) 독일 형법 제47조 (단기자유형의 제한) ① 법원은 범죄행위 또는 행위자의 인격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이 행위자의 교화 또는 법질서의 방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유형의 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6월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한다.

②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6월 이상의 자유형이 고려되거나 또는 그것이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1항에 의한 자유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법률이 자유형의 하한을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 제1문에 의한 벌금형의 하한은 해당 규정에 정하여진 자유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 경우 벌금형 30일수는 자유형 1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로 신의기, 위의 논문, 110면(각주19) 참조.

191) 독일 형법 제40조(일수벌금형)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1일 벌금액은 최소 1유로 최고 30,000유로로 결정한다.

③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을 추산할 수 있다.

④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고지한다.

192) 안성훈, 위의 논문, 326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43면.

제2단계는 1일의 일수벌금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하루 평균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순수입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각종 세금, 보험료, 가족에 대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sup>193)</sup> 일수벌금액은 최소 1유로에서 최대 30,000유로며 그 범위 내에서 정한다(독일 형법 제40조 제2항).<sup>194)</sup> 납부해야하는 일수 벌금액은 산정된 벌금일수와 일수벌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이후 벌금형 선고 시 납부경감조치로, 선고받은 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납부기한의 지정 또는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할 것인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42조).<sup>195)</sup>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결정된 것을 나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가 이를 결정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5조a).<sup>196)</sup> 벌금형의 분납을 허가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

---

독일 형법 제54조(병합형의 형태) ② 병합형은 단일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병합형은 유기자유형인 경우에는 15년, 재산형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가액 및 벌금형인 경우에는 720일수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193) 이주희, 위의 논문, 708면.

194) 안성훈, 위의 논문, 326면.

195) 독일 형법 제42조 (납입의 경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의 즉시 납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납입기한을 지정하거나 분납액을 정하여 벌금의 분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이라는 은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납입경감의 허가 없이는 범죄로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가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경우, 법원은 벌금형의 납입경감을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증거이 부과될 수 있다.

196) 안성훈, 위의 논문, 326면; 신의기, 위의 논문, 123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459a(납입부담의 경감) ① 판결이 확정력을 갖게 된 이후에 집행기관은 벌금형과 관련된 납입부담의 경감(형법 제42조)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 또는 형법 제42조에 따른 납입부담의 경감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내린 결정은 사후에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독일 형법 제42조).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자유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의 일수벌금에 해당한다(독일 형법 제43조).<sup>197)</sup>

## 2. 핀란드

핀란드는 1921년 형벌은 행위자의 상이한 경제적 능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책임원칙을 근거로 하여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한 최초 국가이다.<sup>198)</sup>

1단계는 핀란드 형법 제2a장 제1조에 따라 벌금일수를 결정한다. 벌금일수는 최소 1일에서 최대 1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2개 이상의 범죄에 대해 동시에 일수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법 제7장 제3조에 의하여 최대 240일의 병합벌금(a joint fine)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최대의 벌금일수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최대 벌금일수의 총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1969년 6월 1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서 최소 벌금일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병합벌금은 규정된 최소 벌금일수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sup>199)</sup>

2단계는 핀란드 형법 제2장 제2호에 따라 행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일수벌금액이 산정된다. 우선 핀란드는 일수벌금액에 대한 최소 및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 및 기초소비를 위한 고정공제에 한정하

---

자에게 불리하게 선행재판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에 근거하는 때에만 허용 된다. ③ 형법 제42조 제2문에 따라 분납액을 정하여 벌금형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소송기록에 기재한다. 집행기관은 납입부담의 경감을 새로이 승인할 수 있다.(이하 생략)

197) 독일 형법 제43조(대체자유형)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유형으로 대체한다.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대체자유형의 하한은 1일이다.

198) 조규범, 위의 보고서, 41면.

199) 양량해, 위의 논문, 90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41면.

여 매월 평균수입의 60분의 1이 일수벌금액으로 산정된다.<sup>200)</sup> 매월 평균수입의 기준은 가장 최근의 과세기준이지만, 최근의 과세기록이 확인될 수 없거나 그 사이에 재산변화가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정보를 기준으로 일수벌금액을 산정한다. 벌금의 총액은 벌금일수와 일수벌금액의 곱한 금액이다.<sup>201)</sup>

핀란드는 벌금의 분납 및 연납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미납 시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납입 하는 규정 또한 없다.<sup>202)</sup>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 환형처분 된다. 환형처분은 3일의 납부하지 않은 일수벌금을 1일의 자유형으로 대체하고, 만약 유로라는 화폐단위로 일수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는 매 30유로가 1일의 자유형으로 대체된다. 다만, 환형처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납부하지 않은 일수벌금이 12일 또는 120유로 미만일 경우라면 환형처분 하지 못한다.<sup>203)</sup>

또한 벌금형을 야기한 범죄행위가 환형처분을 내려야하는 고려사항이 없거나 18세 미만일 경우 환형처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중요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납입하지 못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환형처분 하지 않을 수 있다.<sup>204)</sup>

### 3. 스위스

스위스는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형법에 따라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형법 제34조에서 제39조까지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sup>205)</sup>

---

200) 조규범, 위의 보고서, 42면.

201) 조규범, 위의 보고서, 42면.

202) 조규범, 위의 보고서, 43면.

203) 조규범, 위의 보고서, 43면.

204) 양량해, 위의 논문, 93면.

1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책임에 기초하여 벌금일수를 산정한다. 벌금일수의 하한은 규정하지 않고 상한은 최대 360일로 한다. 2단계에서는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수벌금액을 산정한다. 일수벌금액의 최대 3,000 스위스 프랑이며 하한은 제한이 없다. 일수벌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각 주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만 한다.<sup>206)</sup>

스위스는 일수벌금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신청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기간연장도 가능하다. 만약 벌금납부를 면탈할 혐의가 확실한 경우 집행관청은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sup>207)</sup>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자유형으로 대체되며, 1일의 벌금일수는 1일의 자유형으로 대체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일수벌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였던 개인적·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자유형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4개월 이내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일수벌금의 감경을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sup>208)</sup>

205) 안성훈, 위의 논문, 329면; 이주희, 위의 논문, 705면.

206) 조규범, 위의 보고서, 45면.

스위스 형법 제34조(벌금형 산정) ① 범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벌금형의 액수는 최고 360일로 한다. 법원은 행위자의 책임(Verschulden)에 따라 일수를 정한다.

② 1일 일수정액은 최고 3000프랑으로 한다. 법원은 1일 일수정액을 정함에 있어서 판결시의 행위자의 개인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 예컨대 수입과 재산상태, 생활비, 가족의무와 부양의무 그리고 최소생계비 등을 고려한다. ③ 연방, 칸톤,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청은 1일 일수정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1일 일수벌금의 일수와 정액은 판결에 기재한다.

207) 스위스 형법 제35조(집행) ① 집행관청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1월부터 12월의 기간 내에서 그 납입기간을 정한다. 집행관청은 분납을 명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벌금액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형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데 대하여 정당한 혐의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청은 즉각적인 납입을 요구하거나 담보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208) 스위스 형법 제36조(대체자유형) ①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벌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사회봉사명령은 6개월 미만의 단기자유형 또는 180일 이하의 일수벌금을 대체하여 최대 720시간까지 명할 수 있고, 최대 2년의 기간으로 한다.<sup>209)</sup> 만약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자유형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사회봉사 4시간은 1일의 벌금일수 또는 1일의 자유형으로 대체된다.<sup>210)</sup>

#### 4. 스웨덴

스웨덴은 1931년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벌금형을 일수벌금, 정액(총액)벌금, 표준화벌금 3가지 종류로 두고 있으며, 일수벌금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다. 각 범죄에 특정형식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일수벌금으로 부과되고, 30일 미만의 일수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는 정액벌금으로 부과한다(스웨덴 형법 제25장 Section 1).<sup>211)</sup> 수죄의 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일수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

대체한다. 벌금형 1일수는 자유형 1일에 해당한다. 대체자유형은 벌금이 납입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벌금형이 해당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때에는 법원이 대체자유형에 관하여 정한다. ③ 자신의 책임 없이 판결이후 일수정액의 산정에 중요한 정황들이 현저히 악화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대체자유형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a. 24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거나 b. 1일 일수정액을 감액하거나 c. 사회봉사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사회봉사를 명한 때에는 제37조, 제38조 그리고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납입기일의 연장 또는 1일 일수정액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자유형을 집행한다.

209) 스위스 형법 제37조(사회봉사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6월 미만의 자유형 또는 18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을 대신하여 최고 7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스위스 형법 제38조(사회봉사명령 집행) 집행관청은 사회봉사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고 2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210) 스위스 형법 제39조(사회봉사명령 변경) ① 사회봉사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판결 또는 관할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조건과 의무사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사회봉사를 벌금형 또는 자유형으로 변경한다. ② 사회봉사 4시간은 벌금형 1일수 또는 자유형 1일에 해당한다. ③ 자유형은 벌금형의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된 경우에는 일수벌금형으로 병합되어 부과할 수 있다(스웨덴 형법 제25장 Section 1).<sup>212)</sup>

일수벌금의 벌금일수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50일로 부과되며, 일수벌금액은 피고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기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 30크로나 이상에서 최대 1,000크로나로 산정된다. 벌금일수와 일수벌금액을 곱한 금액이 벌금형의 총액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50크로나까지 감경될 수 있다(스웨덴 형법 제25장 Section 2).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집행법에 따라 최소 2주, 최대 3개월까지의 자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스웨덴 형법 제25장 Section 8).<sup>213)</sup>

##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75년 시행된 신형법에 따라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sup>214)</sup> 벌금일수의 상한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최소 2일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일수벌금액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최소 4유로에서 최대 5,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오스트리아 형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sup>215)</sup> 2009년 개정을 통해 하한

211) 안성훈, 위의 논문, 328면.

212) 스웨덴의 정액벌금은 주로 도로교통위반 등 주로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최소 100크로나에서 최대 2,000크로나로 부과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낮은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스웨덴 형법 제25장 Section 3). 표준화벌금은 벌금액산출을 특별한 계산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벌금형으로 최저금액은 100크로나이다.(스웨덴 형법 제25장 Section 4); 안성훈, 위의 논문, 328면 참조.

213) 안성훈, 위의 논문, 328-329면.

214) 조규범, 위의 보고서, 47면.

215) 안성훈, 위의 논문, 327면.

오스트리아 형법 제19조(벌금형)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한다. 벌금형의 하한은 2일수이다. ② 일수정액은 1심 판결시의 범죄자의 개인적 사정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산정한다. 일수정액의 하한은 4유로이며 상한은 5,000유로이다. ③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는 때에 대비하여 대체자유형을 정해야한다. 이때 대체자유형 1일은 벌금형 2일수에 해당한다.

을 2유로에서 4유로로, 상한을 5,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상향시켰다.<sup>216)</sup>

또한 자유형의 대체하여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법원은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대하여 360일수 이하의 일수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규정된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360일수 이하의 일수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오스트리아 형법 제37조).<sup>217)</sup>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자유형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체자유형 1일은 벌금일수 2일에 해당한다(오스트리아 형법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고 후 범죄인의 사정이 중대하게 악화되어 전액 또는 일부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미집행 벌금형에 대하여 다시 양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의로 납입불능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오스트리아 형법 제30조a).<sup>218)</sup>

216) 안성훈, 위의 논문, 327면(각주44).

217) 오스트리아 형법 제37조(자유형을 대체하는 벌금형의 선고) ① 벌금형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을 때 행위자로 하여금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대신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② 벌금형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행위에 대해 제1항의 자유형보다는 중하나 10년 이하인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을 때 행위자로 하여금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사건의 상황이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와 유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범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고로 충분한 때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218) 안성훈, 위의 논문, 327면.

오스트리아 형법 제31조a (형벌, 범죄수익몰수, 재산가치박탈의 사후적 감경) ① 형벌을 감경할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하거나 알려진 때에는 법원은 형벌을 적절하게 감경해야 한다. ② 벌금형에 처해진 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경제적 능력이 사후적으로 중대하게 악화된 경우 법원은 아직 집행되어야 할 벌금형에 대하여 일수 정액의 상한을 제19조 2항의 한도에서 새롭게 정해야한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상황을 고의적으로 또는 직업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악화시킨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6.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국가들이 일수벌금제도를 받아 들인 것을 지켜본 이후, 1983년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sup>219)</sup> 그러나 프랑스는 종래의 총액벌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수벌금형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sup>220)</sup> 범죄를 중대성과 적용되는 형에 따라 중죄, 경죄, 위경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래의 총액벌금형은 주로 중죄와 위경죄에 선고되고 일수벌금형은 10년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죄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따라 법원은 총액벌금형과 일수벌금형 중 임의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다.<sup>221)</sup> 또한 범인에게는 선고될 수 없고, 벌금형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구금형에 해당하는 군사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없다.<sup>222)</sup>

벌금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하한의 규정은 없고 3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수벌금액은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상한은 1,000유로이며 하한 규정의 규정은 없다.<sup>223)</sup>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검사장, 수사관사 또는 수소법원은 비밀보호 의무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타 피고인의 자산점유자에게 금융정보 또는 세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있다.<sup>224)</sup>

법원은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 가족관계상, 직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유를 참작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집행 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219) 조규범, 위의 보고서, 48면.

220) 안성훈, 위의 논문, 330면.

221) 조규범, 위의 보고서, 48면.

222) 정승환, 위의 논문, 324면.

223) 안성훈, 위의 논문, 330면; 조규범, 위의 보고서, 49면.

224) 정승환, 위의 논문, 324면.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행형시설에 수용한다.<sup>225)</sup>

< 국가별 일수벌금제도 비교 >

	벌금의 일수	1일 벌금액	대체자유형 기준
독일	5일 - 360일	1 - 30,000유로	벌금형 1일 = 대체자유형 1일
핀란드	1일 - 120일	월 평균 수입의 1/60	벌금형 3일 = 대체자유형 1일
스위스	(하한 없음) 360일 이하	(하한 없음) 3,000프랑 이하	벌금형 1일 = 대체자유형 1일
스웨덴	30일 - 150일	30 - 1,000크로나	최소 14일부터 최대 3개월 미만
오스트리아	2일 이상 (상한 없음)	4 - 5,000유로	벌금형 2일 = 대체자유형 1일
프랑스	(하한 없음) 360일 이하	(하한 없음) 1,000유로 이하	미지급 벌금일수 1/2에 상당하는 기간

225) 안성훈, 위의 논문, 330면.

## II. 입법례의 시사점

### 1. 벌금일수

일수벌금제도는 양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죄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범죄일수’를 정한다.<sup>226)</sup> 따라서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평가요소로서 고려된다. 하지만 양형의 조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일수’를 결정하는 뚜렷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벌금일수’의 상한과 하한은 모두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sup>227)</sup>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는 벌금일수의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한을 2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와 프랑스는 상한을 360일로 규정하되 하한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현행 벌금형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벌금일수’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과거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형법개정안과 이미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sup>228)</sup> 등을 참고하여 하한을 5일로 규정하고 상한은 360일로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

226) 이진국, 위의 논문, 69면.

227) 이상한, 위의 논문, 293면; 이주희, 위의 논문, 705면.

228) 독일의 경우 ‘벌금일수’를 5일에서 360일로 규정하고 있다.

## 2. 1일 벌금액

일수벌금제도의 핵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현행 벌금형제도와 상반되는 부분이며,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의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사소한 벌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는 일수벌금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인 역차별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실질적인 형벌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1일 벌금액'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형벌의 위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1일 벌금액'의 하한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형벌적인 위하는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실업자 등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를 대비하여, 일수벌금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하한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sup>229)</sup>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와 프랑스의 경우에는 '1일 벌금액'의 하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핀란드는 '1일 벌금액'의 하한과 상한에 대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 및 기초소비를 위한 고정공제에 한정하여 매월 평균수입의 60분의 1이 '1일 벌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sup>230)</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벌금형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논의 끝에 입법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행 벌금형이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어

229) 이상한, 위의 논문, 293면; 이진국, 위의 논문, 78면.

230) 조규범, 위의 보고서, 42면.

느 정도의 비례를 이루기 위해 '1일 벌금액'의 하한을 1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범금일수'의 하한을 5일로 정하고 '1일 벌금액'의 하한을 1만원 규정한다면, 일수벌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현행 벌금형제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금액이 규정될 수 있고, 이에 형벌의 위하가 약해질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1일 벌금액'의 상한에 있어서는 현행의 벌금형제도는 형법과 특별법과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sup>231)</sup>에 의하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한 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십억이나 수백억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sup>232)</sup>에서도 뇌물을 범한자에 대한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십억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sup>233)</sup>

2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2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233) 정승환, 위의 논문, 331면.

반면 형법의 법정형 중 가장 높은 것은 형법 제324조(강요) 제2항<sup>234)</sup>에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형법과 특별법의 불균형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의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sup>235)</sup>와 과거 발의된 법률안<sup>236)</sup>을 근거로 상한은 1,000만원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이렇게 되면 형법상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36억이 된다.

### 제3절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는 벌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sup>237)</sup> 대다수의 봉급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공평한 형벌제도를 만들 위험성이 있음이 지적된다.<sup>238)</sup> 특히 과거 2011년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재산 상태에 관한 충분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

234) 형법 제324조(강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5) 상한을 1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견해로는 이상한, 위의 논문, 293면; 정승환, 위의 논문, 336면.

236) 상한을 1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과거 ‘개정법률안’으로는 2009. 11. 26.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1806718); 2013. 5. 15.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로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1904978); 2014. 5. 8.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0524). 이에 반해 2015. 7. 14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6069)은 5,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법률안이었다.

237) 이기현, 위의 논문, 516면.

238) 강동범, 위의 논문, 90면.

키고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sup>239)</sup>가 있음을 들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즉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는 긍정하지만, 실제 일수벌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른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로서 이른바 ‘시기상조론’이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 판결 전 조사 제도의 확대

판결 전 조사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경력, 성격, 환경, 전과관계 등 그 인격과 환경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법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양형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기여하는 제도이다.<sup>240)</sup> 그러므로 일수벌금제의 운용에 있어서 판결 전 조사제도를 활용한다면, 피고인의 실제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241)</sup>

나아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법원이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관청에 협조를 받아 각 직종별 평균소득을 파악하여 판결 전 조사제도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sup>242)</sup> 이러한 자료가 해마다 누적된다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39)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 53면.

240) 김혜정,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판결전조사제도 확대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형사정책연구원, 2003, 130면.

241) 신의기, 위의 논문, 101면.

242) 최정학, 위의 논문, 82면.

## II. 피고인의 재산상황 조사 범위 확대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즉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있어 개인의 자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재산 및 수입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sup>243)</sup>

또한 현재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서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477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다.<sup>244)</sup>

하지만 현행의 사회적·제도적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제40조 제3항에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을 추산(Schätzung)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 추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45)</sup> 물론 추산은 그 표현대로 부정확한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벌금형을 산정함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sup>246)</sup>

243) 안성훈, 위의 논문, 334면; 최호진, 위의 논문, 271면.

244) 이진국, 위의 논문, 77면; 이상한, 위의 논문, 291면; 안성훈, 위의 논문, 334면.

245) 최호진, 위의 논문, 280면; 정승환, 위의 논문, 334면.



오히려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법원에 지나친 업무의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sup>247)</sup> 아울러 피고인의 직업, 부동산 자산,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제반자료를 근거로 추산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sup>248)</sup>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기관에 대한 피고인의 재산상태 조사의 근거규범은 마련되어 있지만, 재산상태 및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민간 기업에 대한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sup>249)</sup> 즉 「민사집행법」상의 재산조회제도<sup>250)</sup>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직접 은행이나 피고인이 종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sup>251)</sup>

생각건대 우선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납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형벌부과를 위한 공적수행으로 판단하여

246) 최호진, 위의 논문, 281면; 정승환, 위의 논문, 334면.

247) 최호진, 위의 논문, 281면.

248) 정승환, 위의 논문, 334면; 최정학, 위의 논문, 82면; 최호진, 위의 논문, 281면; 반면 이에 대해 추산권이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로는 이주희, 위의 논문, 706면 참조.

249) 프랑스의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검사장, 수사판사 또는 수소법원은 비밀보호 의무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타 피고인의 자산점유자에게 금융정보 또는 세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보요구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정승환, 위의 논문, 324면 참조.

250)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251) 최정학, 위의 논문, 81면.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sup>252)</sup> 다음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추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수벌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 Ⅲ. ‘벌금일수’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현재 38개 범죄군 마다 형선고의 기준이 되는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벌금형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sup>253)</sup> 그 결과 자유형에 비해 벌금형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관의 양형재량의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54)</sup>

같은 맥락에서 자유형과 같이 일수벌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범죄자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여 ‘범죄일수’를 정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up>255)</sup>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1일 벌금액’은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불법과 책임으로 산정되는 ‘범죄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선 법관

252) 이진국, 위의 논문, 77면; 이상한, 위의 논문, 291면.

253)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의 38개 범죄군은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증거인멸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조세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 배임수증재범죄, 변호사법위반범죄, 성매매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장물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양원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참조.

254) 이상한, 위의 논문, 280-283면; 정승환, 위의 논문, 313-314면.

255) 이상한, 위의 논문, 294면.

의 재량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 법관에 따라 일수벌금형 산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수벌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벌금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IV. 소결

일수벌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 특히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경제력에 비례하는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 전 조사제도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 만일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이 제반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원이 직접 은행이나 피고인이 종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현행의 벌금제도를 대체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많은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벌금일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일수벌금제도의 핵심인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제5장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총액벌금제도는 동일한 불법과 책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만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범인의 환경이라는 요소 속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한 부분을 차지할 여지도 없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석’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요소가 ‘명확히 규정’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총액벌금제도는 결국 각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에 가난한 자에게는 노역장 유치처분으로 단기자유형을 강제하는 것이 되고, 반면 부유한 자에게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요컨대 현행 벌금형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있다.

이러한 총액벌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왔다. 국회에서는 일수벌금제도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개정안’들이 발의 되었고, 학계에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처럼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는 것은 현행 벌금형제도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물론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한다. 특히 도입반대의 논거로서 벌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개인의 자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재산 및 수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또한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477조에 마련되어 있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형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의 분할·납부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벌금형을 선고받는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한 벌금 ‘액수’산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가치는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신체의 부자유를 가져오는 자유형은 누구에게나 신체의 구속이지만, 금전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핵심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현행 벌금형제도는 근본적인 접근자체 부터 문제가 있다. 부자와 가난한자에게 같은 금액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형벌의 감수성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가난하다고 해서 형벌효과를 줄 수 없는 금액을 선고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다. 누구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형벌의 위하를 느낄 수 있게 부과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빈부의 차이는 커지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벌금형제도는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않아 사회의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벌금형은 더 이상 누

구에게나 같은 금액이 선고될 수는 없다. 이에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일수벌금제도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대체수단은 아니다. 또한 오랫동안 유지해온 현행 벌금형제도의 근본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벌금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일수벌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 특히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경제력에 비례하는 ‘1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제도를 활용하고, 만일 정확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이 제반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직접 은행이나 피고인이 종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벌금일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벌금일수’와 ‘1일 벌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도입을 주장하는 다수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일수벌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논의를 참고로 우리에게 맞는 일수벌금형제도가 마련되어 누구에게나 공정한 형벌로서의 벌금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정 시안 ><sup>256)</sup>

- 형법 제45조(벌금) ① 벌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수벌금형으로 산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할 때에는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 ② 벌금형의 일수는 5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하고, 1일 벌금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③ 1일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수입, 재산, 유사 직종자의 평균 소득,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피고인의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1일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타 피고인의 자산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 및 조회할 수 있다. 단, 벌금액을 산정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법원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반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추산할 수 있다.

256) 이상한, 위의 논문, 294면; 정승환, 위의 논문, 336면; 2009.11.26.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1806718); 2013.5.15.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로 '일수벌금형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1904978); 2014.5.8.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0524); 독일 형법 제40조.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선복, 「형법총론」, 세종출판사, 2015.
- 김성돈, 「형법총론」(제4판), 성균관출판부, 2015.
-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12판), 박영사, 2014.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배종대, 「형사정책」(제8판), 홍문사, 2011.
- 배종대, 「형법총론」(제13판), 홍문사, 2017.
- 서주연·최영신,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신동운, 「형법총론」(제9판), 법문사, 2015.
- 오영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2014.
- 이병기·신의기,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이영란, 「형법학: 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11.
- 이재상, 「형법총론」(제6신판), 박영사, 2010.
-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15.
- 임웅, 「형법총론」(제7정판), 법문사, 2015.
- 정성근·정준섭, 「형법강의 총론」, 박영사, 2016.
- 정영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2011.



조규범,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정책보고서 제3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한정환, 「형법총론」(제2권), 동방문화사, 2017.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6.

법무부, 「독일 형법」, 2008.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법무부, 「오스트리아 형법」, 2009.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201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위스 형법전」, 2009.

#### [논문]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벌금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0.

강영철, “재산형<벌금>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40호, 한국교정학회, 2008.

고요석,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성룡, “독일의 일수벌금형 운영 40년 결산이 주는 시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 대검찰청, 2017.

김선복,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김정환,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과 보완”, 보호관찰 제16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 김종덕, “벌금형 집행율의 제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김태우, “법정형 체계의 입법론적 검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현숙, “벌금형과 보호관찰의 쟁점: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 김혜정,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판결전조사제도 확대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형사정책연구원, 2003.
-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형사정책연구 제10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8.
- 서효원, “벌금형 집행의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제73호, 한국교정학회, 2016.
-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안성훈, “현행 벌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 양량해, “벌금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오경식,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 법학논총. 제20집 제2-2호, 조선대학교법학연구원, 2013.
- 윤동호,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 이강민,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교정연구 제71호, 한국교정학회, 2016.

- 이기현,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형사정책연구원, 2007.
- 이경렬, “미납벌금의 대체형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의 도입 문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이상한, “양형기준과 일수벌금제도의 도입”, 한양법학 제25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4.
- 이승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 이승준, “형의 일부집행유예” 외법논집 제2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이주희, “일수벌금제도: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한양법학 제21권 제2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7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창한, “조선시대 형벌제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경찰학회, 2010.
- 정승환,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형사법의 신동향 제37호, 대검찰청, 2012.
-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벌금양형”,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최정배, “벌금형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배수벌금과 물가 연계 벌금을 중심으로”, 국회보 통권 제558호, 2013.
-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한영수, “보호관찰 조건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 제6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06.

###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법무연수원, <http://www.ioj.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양형위원회, <http://sc.scourt.go.kr>

장발장은행, <http://www.jeanvaljeanbank.co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기타]

2017. 2. 1일자, 미디어 오늘 기사, “운전기사 폭행 갑질한 재벌에 내려진 죄는 벌금 300만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58>

2017. 7. 20일자, 이데일리 기사, “[문재인정부 5년]수백만원 벌금못내 감옥행 5년새 20%↑…'장발장은행'지원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  
2017. 8. 17일자, 파이낸셜, “한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수용율 OECD 2위” <http://www.fnnews.com/news/201708171002559014>  
2017. 8. 18일자, 한국경제, “포화상태에 달한 교도소 수용률 121%… OECD 2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756461>  
2017. 9. 12일자, 법률신문, “전주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시행”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 =121050>  
2017. 9. 21일자, 연합뉴스TV “또 일당 480만원 ‘황제노역’… 방지법안은감 감무소식”,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921002300038/?did=1825m>  
2017. 9. 23일자, 한국경제, “서민불황의 그늘..‘벌금대신 노역장’ 올 5만명 넘을 듯”,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259441>

